

동및동남아시아지역어선안전에 관한도쿄회의 참가보고

안국전/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

1997년 2월 4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일본 도쿄에서 한국등 아시아 8개국이 참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길이 24미터이상 45미터미만의 어선에 관한 「동및동남아시아지역어선의안전에관한지침」(이하 “아시아지역지침”이라 부른다.)이 채택되었기에 그 개요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회의배경

어선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은 1977년 스페인의 토레몰리노스에서 개최되어 채택된 바 있는 “1977년 어선안전협약”이 있으며, 동협약 적용대상은 길이 24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동 협약규정이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강화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이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IMO에서는 이를 조속히 발효시키고자 일부규정을 완화하는 형태로 1993년 4월에 토레몰리노스의정서를 채택하여 다시 각국의 비준을 촉구하게 되었다.

1933년 토레몰리노스의정서는 다음과 같이 제1장에서 제10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선박의 길이로 구분하여 제4장, 제5장, 제7장 및 제9장의 적용대상은 길이 45미터 이상으로 하고 45미터미만 어선은 적용을 제외

하고 있다.

제 1 장 : 일반규정	$L \geq 24m$
제 2 장 : 구조, 수밀성	$L \geq 24m$
제 3 장 : 복원성, 감항성	$L \geq 24m$
제 4 장 : 기관, 전기설비	$L \geq 45m$
제 5 장 : 화재안전설비	$L \geq 45m$
제 6 장 : 선원의 보호	$L \geq 24m$
제 7 장 : 구명설비	$L \geq 45m$
제 8 장 : 비상소집 및 훈련	$L \geq 24m$
제 9 장 : 무선통신설비	$L \geq 45m$
제 10 장 : 항해설비	$L \geq 24m$

그러나 토레몰리노스의정서 제3조제5항은 길이 24미터이상 45미터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방법, 조업해역, 해상기후, 피난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통일된 지역기준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동아시아지역에서 조업하는 길이 24미터이상 45미터미만 어선에 적용할 지역기준 제정을 위하여 지역기준개발추진 간사국인 일본이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동초안에 대한 각국의 제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아시아지역기준안에 대한 최종협의 및 확정을 위하여 동아시아지역회의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2. 회의 주요내용

가. 회의목적

- '93 어선안전협약의정서에 의한 길이 24 미터이상 45 미터미만의 어선에 적용할 동아시아지역안전기준 협의 확정 및 채택

나. 회의기간: 1997. 2. 3 - 2. 6(4 일간)

다. 회의장소 : 일본 도쿄, (주관 : 일본 국 운수성)

라. 회의참석

- 동아시아 8 개국 및 IMO 사무국 읍서 벼등 31 명
 - 한국(5), 일본(12), 중국(4), 홍콩(4), 필리핀(2), 인도네시아(2), 말레이시아(1), 태국(1)
- 한국 참석자 : 국제협력관외 4 명
 - 해양수산부 국제 협력 관 안국전 어 선 과 권용철
 - 한국선급 정부대행검사부장 김태우 도 교 지 소 장 차영진
 - 한국어선협회 기술 개발 부 정달성

마. 주요의제

- 의장선출(의장 Sasamura : 일본조선 연구조합 고문)
- 의제별 검토
 - 제 1 장 : 일반규정(지역기준의 적용 및 용어정의)
 - 제 2 장 : 기관·전기설비 및 정기적으로 무인화되는 기관구역
 - 제 3 장 : 방화·화재탐지·소화작업
 - 제 4 장 : 구명설비 및 장치

- 제 5 장 : 무선통신

- 동아시아지역 어선안전기준 선언문 채택
- 기타협의

바. 회의결과

1993년부터 1996년까지 4년동안 일본측 주관하에 각국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업한 동아시아지역기준 초안을 토대로 그간 국가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한 주요 논쟁사항을 중심으로 협의하였으며, 아울러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규제기준으로 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합의된 최종안은 선언문 형식으로 채택하고 그 부속서로서 기관, 전기, 방화, 구명 및 무선설비 등 의 기준을 첨부하도록 하였고, 동 선언문은 IMO의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에 최종 제출되어 “어선안전협약의정서(Protocol)”의 조속한 발효를 촉진키로 하였다.

3. 아시아지역지침의 구성

아시아지역지침은 지침채택에 관한 선언문의 부속서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서문

토레몰리노스의정서의 규정 제Ⅳ장, 제Ⅴ장, 제Ⅶ장 및 제Ⅷ장이 적용 제외하고 있는 길이 45 미터미만의 어선을 적용대상으로 함

- (2) 제 1 장(일반규정) 길이 24 미터이상 45 미터미만의 어선으로 동 및 동남아시아에서 운항하는 어선에 적용
- (3) 제 2 장(기관, 전기설비 및 정기적으로 무인이 되는 기관구역) : 의정서 제 4 장에 대응

- (4) 제 3 장(방화, 화재탐지, 소화 및 소화작업) : 의정서 제 5 장에 대응
- (5) 제 4 장(구명설비 및 장치) : 의정서 제 7 장에 대응
- (6) 제 5 장(무선통신) : 의정서 제 9 장에 대응

4. 지침의 개요

가. 아시아지역 지침의 성격과 적용

아시아지역 지침은 국제협약에 있는 것과 같은 발효요건과 발효시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으며,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가이드라인, 즉 지침이며 아시아 각국이 어선의 안전규칙을 법제화 할 때는 본지침을 지침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적용 어선은 길이 24 미터이상 45 미터미만의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길이 37 미터미만의 소형선에 대해서는 각장의 규정중 완화되어 있는 것이 많다.

또한 일본에서는 총톤수 100 톤미만에 대해서는 안전법규칙에 의한 완화가 있고, 한국에서는 총톤수 139 톤에서 어업허가가 구별되어지는 점등도 고려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지침의 적용 해역에 대해서는 온난평온한 아시아 지역에서 항행·조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의 하계대역, 열대역을 인용한 횡선을 적용하는 안도 심의되었으나 아시아 지역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동및동아시아지역」으로 표현하였다.

나. 제 2 장 기관 및 전기설비

일반적으로 현행의 국내 규칙과 동등한 내용이다. 단 D 부의 「정기적으로 무인이 되는 기관실」, 즉 야간당직이 없는 MO 선 장치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MO 제도가 어선에서는 친숙하지 않는 제도이다.

다. 제 3 장 화재안전장치

일반적으로 현행의 국내 규칙과 동등한 내용이며 특이한 점은 다음과 같다.

- (1) 적용 : 강선에 한정하지 않고 알미늄, FRP, 목조선 전반에 적용
- (2) 방화구조 : 방화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관청의 결정사항으로 함
- (3) 막다른 통로 : 원칙 2.5 미터이하 최장 5 미터

라. 제 4 장 구명설비

구명통의는 100% 비치하며 구명정은 요구하지 않는등 국내 규정과 동등한 내용으로 규정됨.

마. 제 5 장 무선통신설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과 300 톤이상 화물선은 '99. 2. 1 부터 GMDSS를 이행하도록 SOLAS는 규정하고 있다.

본래는 동일 해상에서 각국의 어선과 화물선이 공동으로 구조활동을 가능토록 하였으나 이경우 지나치게 새로운 장비를 탑재하여야 하는 경제적 영향이 특히 현존선에 크다는 것을 각국이 인식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아래 원칙하에 토의하였다.

- (1) 경제적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한다.
- (2)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며, 특히 현존선에 대해서는 점차 대응 토록 한다.
- (3) 모국연안 A₁, A₂해역에서는 해안국을 포함하는 자국기준무선장치(대부분 중단과 SSB)을 이용한 시스템을 계속 운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에 의해

GMDSS 기준의 VHF, MF, HF, 위성 통신장치의 탑재를 면제한다.

- (4) 자국기준 무선장치를 이용한 시스템에 있어서도 GMDSS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기능원칙을 유지한다.
- 2 개의 분리 또는 독립된 수단으로 선박 대 육상의 조난통보
 - 육상 대 선박의 조난통보 수신
 - 선박 대 선박의 조난통보 송수신
- (5) A₃해역 항행조업 어선은 외국 해안국 및 외국선과 공동으로하는 구조활동에 적합하도록 GMDSS 기준의 무선장치를 갖춘다. 다만, 길이 37 미터미만의 어선에서는 A₃해역이지만 비교적 근거리인 경우 경제적 영향등을 고려하여 GMDSS 장비의 일부를 면제한다.
- (6) 또한 A₃해역이지만 A₂해역에 인접한 근거리 해역의 길이 37 미터미만 어선은 GMDSS 기준 무선통신기기에 대신하여 자국기준 무선장치를 이용하여도 좋다.
- (7) 해사안전정보장치에 있어서는 NAVTEX와 같은 근거리용의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으로 대신하여도 좋다. NAVTEX 도달 해역외는 A₃해역으로 되고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해상안전정보가 중요하므로 이를 수신할 수 있는 EGC 또는 HF-DP의 GMDSS의 기준설비를 갖춘다.
- 이러한 원칙하에 무선장비의 설치기준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5. 종합의견

금번 아시아 지역기준회의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어선세력이 많은 국가들이 회의를 주도하여 협상에 임하였으며, 아죽은 우리 어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토록 적극 협상에 임한 결과 거의 전적으로 우리측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어선안전에 관한 동아시아 관계국 회의 개최('97.2.3~2.6)는 아직까지 발효가 지연되고 있는 "93 안전협약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의정서(Torremolinos Protocol)"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어선세력이 많은 동아시아 국가(65%이상)들이 그 지역실정에 맞는 국제기준을 설정하여 합의를 도출하게 함으로써 동의정서의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금번 협의된 동아시아지역기준이 채택된 이상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내에서 조속한 국내조치(ratify, accept 또는 approve)를 하도록 국제적인 강한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서의 발효요건은 체약국 15 개국 이상이 수락 또는 비준하고 길이 24 미터이상 어선의 총합계 척수가 14,000 척에 이르는 날로부터 12 개월후에 발효하기로 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본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여 기존의 국내어선설비 관련규정을 국제적기준에 맞추어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어민들에 대하여도 이를 홍보하여 적극 준수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표 1. 무선장비의 설치기준

항행 · 조업해역		A1		A1+A2		A1+A2+A3			
배의 길이		24m ≤ L <45m		24m ≤ L <45m		24m ≤ L <37m		37m ≤ L <45m	
VIIIF 무선	DSC 조난통보	X		X				X	X
	무선전화(Ch 6, 13, 16)	X		X				X	X
	DSC 청취(Ch70)	X		X				X	X
MF 무선	DSC 조난통보(2187.5kHz)			X				X	
	무선전화(2182kHz, 1605-4000kHz)			X				X	
	DSC 청취(2187.5kHz)			X				X	
MF/HF	DSC 조난통보(1605-27500kHz)							X	X
	무선전화(1605-27500kHz)							X	X
	DSC 청취(2187.5-16804.5kHz)							X	X
위성통신장치						X		X	
EPRIB	VHF(Ch70)	X or X	X or X						
	위성경유(406MHz)			X	X	XX	X	X	X
해상안 전정보	NAVTEX 또는 동등장치	X	X						
	EGC 또는 HF-DP			X*	X*	XX*	X*	X*	X*
SART				X	X	XX	X	X	X
상방향 VHF(1 대)				X	X	XX	X	X	X
자국기준무선장치			X		X	XX			

X : 장비

XX : L<37m 의 어선에 대하여 A3 해역이면서 A2 해역에 인접한 근거리해역을 항행 · 조업하는 경우에는 MF/HF 무선과 무선통신장치를 대신하는 자국기준무선장치를 이용하여도 됨

X* or XX* : NAVTEX 도달 범위외는 EGC 또는 HF-DP 를 설치한다.